

국민제안 접수증			
제목			
주제안자	성명	생년월일	기여도(%)
공동제안자	성명	생년월일	기여도(%)
세부 연락처			
처리상황 공개 여부	[] 공개 [] 비공개(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)		
「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. 년 월 일 접수 행정청 직인 제안 담당자 (서명 또는 인) (전화번호:)			
※ 안 내 1.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, 창의성, 효율성·효과성,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. 2. 행정청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,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·관리합니다.			